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 규정 신설〉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83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 규정 신설	2

I. 개요

1.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8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17.
- (3) 회 부 일 : 2024.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옹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시키고(안 제5조제2호의2 신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u>사회서비스 실태조사</u>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u>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u> ----- ----- ----- -----. -----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2. (생략) <u><신설></u> 3. ~ 10.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u> 3.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1. <u>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u> 2. <u>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u>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는 현행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내역 >

연도	추진사업명	세부내용
'11	유망 사회서비스 수요실태조사	·대상: 바우처 사업 중 일부(8종) -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장애아동재활치료, 아동발달지원 외 3종 ·조사내용: 이용경험자 및 비경험자를 조사하여 서비스별 향후 수요전망 예측
'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수요) 전국 4,000가구, (공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500개소 ·조사내용 - 수요조사: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및 욕구, 가족 생애주기별, 생활 스트레스에 따른 서비스이용의향 등 - 공급조사: 제공기관 운영현황, 재무실태, 고용현황, 인력처우 등
'15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수요) 전국 4,078가구, (공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100개소 ·조사내용 - 수요조사: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및 욕구, 가족생애주기별, 생활 스트레스에 따른 서비스이용의향 등 - 공급조사: 제공기관 운영현황, 재무실태, 고용현황, 인력처우 등
'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수요) 전국 3,000가구, (공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000개소 ·조사내용 - 수요조사: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및 욕구, 가족생애주기별, 생활 스트레스에 따른 서비스이용의향 등 - 공급조사: 제공기관 운영현황, 재무실태, 고용현황, 인력처우, 유망서비스 등 - 유망사회서비스 발굴 정성조사
'19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수요) 4,000가구 (공급) 8대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1,000개소, 종사자 2,000명 ·조사내용 - 수요조사: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별, 소득수준별, 10대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 경험 및 향후 의향 조사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도	추진사업명	세부내용
		- 공급조사: 사회서비스 영역별 사업현황(사업체수, 종사자, 재무 현황 등)은 기존 조사 자료(전국사업체조사 등)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8대 전자바우처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일반가구 6,000가구, (부가조사) 청년가구원 1,500명 ·조사내용 - 기초분석: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별,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등 조사 - 부가분석: 청년 사회서비스 욕구 및 이용 시 코로나19 영향력 등
'22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500개소 ·조사내용 - 사업체 일반현황, 주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고용 실태, 재무 실태,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정책인식 및 거버넌스 등
'23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일반가구 5,000 가구, 중장년가구원 2,500명 ·조사내용 - 가구조사 : 가구 일반현황, 사회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사회서비스 정책인식 등 - 가구원조사 : 중장년 사회서비스 욕구 및 이용경험, 개인의 현재 상태 등
'24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500개소 ·조사내용 : 사업체 일반현황, 주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고용 실태, 재무 실태,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정책인식 및 거버넌스 등

□ 현행법 제4조제6항²⁾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을 책임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³⁾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는 단순히 대도시·중소 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어, 세부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⁴⁾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2023년 기준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대비 이용자 수를 비교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시설 1개당 이용자가 55명인 반면, 인천광역시 8명으로 나타남. (p.10 참고)

4) 구체적인 실태조사 내용은 p.8~9 참고

□ 이에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 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의 주체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을 하위법령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 제2조의2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음.

< 현행 시행령과 개정안의 비교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 안
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u>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u> 을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u>지역별</u> ·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u>공급 현황</u> ,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u>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시행</u> 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다만, 법제적인 측면에서 현행법 제5조제2항제9호⁵⁾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제2호의2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9호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 제5조의2제1항제3호의 자구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

문 의 처
02)6788-5497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참고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2023년 실시)
-----	--------------------------

1) 지역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수준

(단위: %, 개, 가구)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이용 서비스 개수 (SE)		0.5 (0.0)	0.4 (0.0)	0.4 (0.0)
성인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2.8	3.4	6.1
	장애인 돌봄 서비스	0.4	0.2	0.6
	기타 성인 돌봄 서비스	0.9	0.7	2.0
아동 돌봄	출산지원 서비스	0.7	0.5	0.6
	영유아 돌봄 서비스	3.8	3.8	3.6
	방과후 돌봄 서비스	0.7	0.5	0.6
⋮	⋮	⋮	⋮	⋮
문화	문화 및 여가 서비스	12.6	10.5	8.7
주거	주거지원 서비스	1.9	0.6	1.9
환경	환경 서비스	1.1	0.9	0.3
계(가구 수)		(2,216)	(1,963)	(822)

2) 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수준

(단위: %, 개, 가구)

구분		미혼기	첫 자녀 출생전기	첫 자녀 초등입학 전기	첫 자녀 초중고 재학기	성인 첫 자녀 동거기	자녀 독립기	노인기	기타
평균 이용 서비스 개수 (SE)		0.2 (0.0)	0.3 (0.0)	1.2 (0.1)	0.7 (0.0)	0.4 (0.0)	0.3 (0.0)	0.4 (0.0)	0.3 (0.1)
성인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	—	—	—	—	—	14.6	14.0
	장애인 돌봄 서비스	—	0.5	—	0.5	0.5	0.2	0.6	0.6
	기타 성인 돌봄 서비스	—	—	—	—	—	0.2	4.0	1.0
아동 돌봄	출산지원 서비스	—	—	16.7	—	—	—	—	—
	영유아 돌봄 서비스	—	—	59.5	9.0	0.4	—	0.2	—
	방과후 돌봄 서비스	—	—	—	3.9	—	—	—	—
⋮	⋮	⋮	⋮	⋮	⋮	⋮	⋮	⋮	⋮
문화	문화 및 여가 서비스	11.0	11.1	12.5	16.9	11.7	10.9	7.4	5.4
주거	주거지원 서비스	1.6	2.6	0.5	1.0	0.7	1.7	1.6	—
환경	환경 서비스	1.2	1.4	0.9	1.5	0.7	1.0	0.3	1.1
계(가구 수)		(433)	(312)	(190)	(777)	(829)	(1,228)	(1,163)	(68)

3) 사회서비스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7점 평균	SE	① +② +③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했다	② 불만족 했다	③ 약간 불만족 했다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만족	⑤ 약간 만족 했다	⑥ 만족 했다	⑦ 매우 만족 했다
성인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N=158)	5.22	0.05	0.9	—	—	0.9	8.0	91.2	61.2	28.3	1.6
	장애인 돌봄 서비스(N=18)	5.08	0.14	—	—	—	—	12.2	87.8	68.1	19.7	—
	기타 성인 돌봄 서비스(N=45)	5.16	0.11	—	—	—	—	16.4	83.6	52.9	28.9	1.9
⋮	⋮	⋮	⋮	⋮	⋮	⋮	⋮	⋮	⋮	⋮	⋮	⋮
환경	환경 서비스 (N=42)	5.32	0.11	—	—	—	—	13.1	86.9	43.2	42.1	1.5

참고2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2022년 실시)

1) 업종별·종사자 규모별·지역별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주요 사업영역

구분		주요 사업 영역									계
		성인 돌봄	아동 돌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교육 및 정보 제공	고용	문화	주거	환경	
업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98.2	0.1	93.6	82.4	59.8	14.6	7.6	27.5	84.6	(274)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5.5	1.5	94.4	73.8	37.5	0.5	91.9	44.9	45.8	(23)
	⋮	⋮	⋮	⋮	⋮	⋮	⋮	⋮	⋮	⋮	⋮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25.3	24.5	75.3	85.6	81.6	7.7	88.7	6.6	67.6	(205)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37.7	50.1	54.8	46.5	89.1	14.9	88.5	18.5	50.9	(217)
종사자 규모	1~4인	33.5	53.8	66.7	65.5	75.8	9.1	79.6	15.0	38.2	(743)
	5~9인	19.2	74.5	71.4	68.4	71.9	9.2	29.2	5.8	60.8	(1,229)
	⋮	⋮	⋮	⋮	⋮	⋮	⋮	⋮	⋮	⋮	⋮
	100인 이상	79.7	38.5	53.3	67.6	88.1	32.4	49.9	25.7	10.3	(45)
지역	대도시	36.3	58.4	71.8	69.4	75.8	10.5	39.1	9.2	55.2	(1,563)
	중소도시	33.1	61.1	73.8	71.4	76.6	11.0	38.3	9.4	58.0	(1,499)
	농어촌	52.8	45.7	76.3	70.0	72.2	11.2	41.4	14.8	56.7	(291)
전체		36.3	58.5	73.1	70.3	75.8	10.8	39.0	9.8	56.6	(3,353)

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체 현황

n= 사회서비스 사업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체, (단위: %, 개소)

구분		주요 사업 대상								계
		①	②	③	...	⑬	⑭	⑮	⑯	
업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0.1	0.0	1.2	...	13.6	7.2	0.8	3.7	(1,284)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0.7	0.8	1.7	...	59.5	18.6	0.0	4.5	(11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0.4	2.4	9.3	...	10.7	3.7	0.0	1.0	(212)
	...	...	...	...	...	...	...	...	...	...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3.6	90.5	20.8	...	5.7	7.7	11.0	2.4	(94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10.6	78.3	5.3	...	8.4	10.0	3.9	3.2	(978)

주: 1) 계의 괄호 안은 사업체 수임.

2) ①영유아(0~5세), ②아동·청소년(6~18세), ③청년(19~34세), ④중장년(35~64세), ⑤노인(65세 이상), ⑥장애인, ⑦여성, ⑧가족, ⑨한부모가족, ⑩다문화가족,

⑪근로자/실업자/구직자, ⑫노숙인, 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⑭차상위 계층, ⑮구분 없음, ⑯기타

3) 1~5순위 주요 사업 영역별로 주요 사업 대상을 복수응답으로 받아 합산하여 산출함.

3) 종사자 고용 관련 (총 40여개 항목)

-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성별 종사자 수, 연령대별 종사자 수, 평균 근속 기간, 연간 이동 종사자 수, 보험가입 대상자 및 가입자 수 현황, 종사자의 인적개발 관련 항목, 육아휴직제도 등 직원복지 현황 등

참고3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및 이용자 수 (2023년 12월 기준)
-----	-------------------------------------

□ 사회복지시설 수

구분(설립주체별)	노인시설(개)	장애인시설(개)	아동시설(개)	총 시설(개)
강원특별자치도	901	1,090	141	2,132
경기도	5,095	10,280	690	16,065
경상남도	1,281	2,280	240	3,801
경상북도	1,326	1,689	233	3,248
광주광역시	639	1,269	136	2,044
대구광역시	882	1,344	124	2,350
대전광역시	510	1,129	166	1,805
부산광역시	918	1,778	168	2,864
서울특별시	2,539	5,295	511	8,345
세종특별자치시	79	340	18	437
인천광역시	1,201	1,908	137	3,246
전라남도	1,043	1,440	173	2,656
전라북도	967	1,358	168	2,493
제주특별자치도	209	512	98	819
충청남도	1,016	1,758	130	2,904
충청북도	768	1,196	169	2,133
총합계	19,687	35,385	3,386	58,458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

구분(설립주체별)	노인시설(명)		아동시설(명)		장애인시설(명)		전체(명)	
	생활인원	입소정원	생활인원	입소정원	생활인원	입소정원	생활인원	입소정원
강원특별자치도	11,149	27,274	30,743	49,412	1,539	2,429	43,431	79,115
경기도	77,772	268,592	314,268	448,377	7,448	30,082	399,488	747,051
경상남도	14,536	33,191	60,405	98,633	2,494	4,982	77,435	136,806
경상북도	16,073	46,677	43,986	75,249	2,842	6,263	62,901	128,189
광주광역시	3,317	33,647	29,422	52,983	1,521	2,034	34,260	88,664
대구광역시	8,791	23,194	39,891	63,751	1,987	2,960	50,669	89,905
대전광역시	8,409	16,241	26,489	42,008	1,765	3,492	36,663	61,741
부산광역시	6,581	34,543	51,892	79,960	1,737	5,241	60,210	119,744
서울특별시	19,572	114,456	157,537	235,381	3,616	18,496	180,725	368,333
세종특별자치시	793	2,656	14,154	19,249	213	291	15,160	22,196
울산광역시	2,351	11,137	22,649	32,216	1,139	3,329	26,139	46,682
인천광역시	18,017	40,084	60,722	85,599	1,219	2,622	79,958	128,305
전라남도	10,598	29,452	36,528	65,750	1,504	4,711	48,630	99,913
전라북도	11,244	35,983	32,402	58,123	1,920	5,265	45,566	99,371
제주특별자치도	3,487	6,644	19,422	27,605	1,092	2,704	24,001	36,953
충청남도	13,140	52,953	49,553	78,842	1,751	6,128	64,444	137,923
충청북도	11,097	23,724	36,461	59,038	2,097	3,957	49,655	86,719
총합계	236,927	800,448	1,026,524	1,572,176	35,884	104,986	1,299,335	2,477,610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육통계)

<참고>

- 노인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 등 제공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지역 종합 노인복지시설)
-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 장애인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의료재활시설